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7월 28일, 서영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6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6. 9.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6. 9.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서영석의원)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 개정안은 목적 외 사용, 불법유통 등 중대한 마약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나 허가취소와 별도로 부당이득에 연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 ☐ 다만, 신설되는 과징금은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병과되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몰수·추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첫째, 부과대상 위반행위 및 적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징벌적 과징금의 대상을 법 제5조, 제11조 및 제32

조 위반으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허가·지정·승인이 취소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모든 마약류관리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와 경미한 위반행위를 구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신설되는 과징금은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와 함께 부과되는 경제적 제재이고, 소규모 약국·의료기관 등에도 동일한 법정 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대상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중대한 마약류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과 과징금이 부과대상자에게 미치는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적용요건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이 정한 고려사항이 실제 부과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과징금의 법정상한 산정구조와 상한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를 과징금 상한으로 하고, 이익이나 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정구조에 따르면 취득한 이익 등이 소액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이 오히려 크게 낮아질 수 있음.

- 셋째,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및 몰수·추징과 과징금

간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로서 형사처벌이나 몰수·추징과 그 성격 및 목적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병과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님.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과 몰수·추징 등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 전체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재 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안 제46조의2제5항은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금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과징금과 가산금”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서영석)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